

일반논문

# 검찰의 디지털 성범죄 기소 관행과 그 한계: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사건을 중심으로\*

김소라\*\*

〈국문초록〉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입증하는 검찰의 기소 관행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글에서는 불법촬영물이 유통된 136개 사이트에 대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고발 이후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의 불기소 결정서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 관행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하지 못해 기소중지로 일단락된 사건이 많고, 기소 기준과 적용 법조가 일관되지 않으며, 촬영 및 유포행위를 한 피의자를 기소 유예하는 관행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향후 불법촬영물 유통이 산업화된 현실을 반영한 검찰의 기소, 처분의 일관성 제고, 국제공조수사를 위한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디지털 성범죄, 해외 서버 사이트, 검찰, 기소 관행, 불기소 결정서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7073765).

연구 자료를 제공해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그리고 세심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필자의 부족함으로 논평 사항을 모두 원고에 반영하지 못했지만, 향후 연구를 통해 제기해주신 문제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강사(stellatis@gmail.com)

© 2021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 1. 문제 제기

한국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경찰과 검찰의 현실에 뒤쳐진 수사 관행과 사법부의 가벼운 처벌<sup>1)</sup>은 디지털 성범죄<sup>2)</sup> 문제의 해결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2015~2016년 전개된 ‘소리넷’ 폐쇄 운동, 2018년 성별에 따른 편파수사를 규탄하며 6차에 걸쳐 열린 ‘해화역 시위’와 같은 해 알려진 웹하드 카르텔, 2019년 보도된 아동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W2V’(웰컴투비디오)의 존재와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낮은 처벌, 2020년 그 실태가 드러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이르기까지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으며 그 양상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분석한 연구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체로 벌금형에 그치는 등 가볍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때에도 그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2011년 1월에서 2016년 4월까지 서울지역 관할 법원에서 선고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1심 판결 1,540건 가운데 벌금형이 71.79%, 집행유예가 14.67%, 선고유예가 7.46%, 징역형이 5.32%였으며(한국여성변호사회, 2016), 2017년 서울지역 관할 법원에서 선고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심 판결 360건 중 벌금형이 54.1%, 집행유예가 27.8%, 선고유예가 6.0%, 징역형이 11%로 나타나는 등(윤덕경 외, 2018),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점차 강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벌금형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2) 불법촬영, 성적인 이미지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이나 상대의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의 유포, SNS 등에 게시된 사진을 활용한 이미지의 합성과 변형, 이러한 영상과 이미지의 유통을 매개하는 플랫폼의 운영 등과 같은 행위를 지칭하기 위해 그간 ‘사이버 성폭력’, ‘온라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과 같은 용어가 사용되어왔다. 이들 용어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의미를 갖기보다 그 강조점이 조금씩 다른데, ‘사이버 성폭력’과 ‘온라인 성폭력’이라는 용어가 현실 세계와 구분되는 가상공간에서의 성폭력에 초점을 맞춘다면, ‘디지털 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이루어지는 동의 없는 촬영-유포-소비 행위 전반에 초점을 맞춘다. 이 글에서는 2017년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에서 사용되기 시작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공론화 이후 더욱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다양함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미비, 그리고 법정형에 미치지 못하는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에 비판의 목소리가 집중되었다.

특히 25만 건 8테라바이트에 이르는 영아, 유아, 아동 대상 성착취물을 다크웹에서 유통해온 사이트 'W2V'의 운영자가 한국인 손정우이며 이에 대해 한국 법정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손정우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범죄인 송환 요청에 대해 2020년 7월 한국 법원이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법원의 약한 처벌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법원의 판단들이 재조명되며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해시태그 운동이 SNS에서 벌어지는 등 법원의 약한 처벌은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되기 시작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활동도 잇따랐는데,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리셋'(ReSET)은 텔레그램 성착취의 근절을 위한 입법적 방안을 마련하라며 2020년 1월 국회에 국민동의청원을 제출해 10만 명이 넘는 이들의 동의를 받았고, 2020년 6월에는 '추적단 불꽃'과 함께 시민 7,500여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sup>3)</sup>

이처럼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준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반면, 검찰의 공소제기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피의자의 기소 여부와 적용 법조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입증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에서 검찰의 공소제기는 사법부의 판단만큼이나 중요하다. 경찰이 수사 후 기소 의견으로 사건

3) '리셋'(ReSET)과 '추적단 불꽃'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9.8%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고 답했으며, 98.8%가 사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진지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경향신문』, 2020.12.26).

을 검찰에 송치해도, 검찰이 불기소 판단을 내리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조항의 적용을 통해 범죄성을 구성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검찰의 실천 속에서 기소 여부와 구형 수준이 결정되고, 그 위에서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한다는 점에서도 검찰의 기소 관행은 법원의 판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조주빈보다 먼저 구속된 닉네임 '와치맨'의 수사에서, 그가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의 운영에 개입한 것을 범죄 사실로 인지하지 않은 채 검찰이 그를 기소함에 따라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보강 수사로 '와치맨'에 대해 영리 목적 성범죄 혐의를 추가해 변론 재개를 신청했고, 3년 6개월이었던 검찰의 구형은 10년 6개월이 되었으며, 1심 법원은 2020년 11월 '와치맨'에게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시사IN』, 2020.12.9). 이처럼 검찰의 공소제기, 적용 법조, 사건에 대한 의견과 구형 등은 범죄의 전모를 밝혀 사법부에 처벌을 위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낮은 기소율과 검찰의 소극적인 기소 태도는 범죄의 처벌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2015년 12월 남인순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 가운데 69.7%가 기소되었는데, 이는 2013년 54.5%, 2014년 44.8%로 계속해서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헤럴드경제』, 2015.9.16). 이후에도 기소율은 계속 하락해 2015년 44.3%, 2016년 41.7%, 2017년 44.6%, 2018년 46.9%, 2019년 46.0%(대검찰청, 각 년도: 226~227) 등 40% 안팎으로 나타난다. 이는 살인(69.4%), 강도(67.4%), 방화(54%) 등 여타 강력범죄의 기소율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2019년 기준), 수사가 개시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절반가량이 사법부의 판단에까지 다다르지 못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소권을 독점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검찰의 중

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 관행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디지털 성범죄 실태 파악(김소라, 2018; 장다혜·김수아, 2018; 최란, 2019), 처벌을 위한 법률 및 제도 마련(강희영, 2020; 김한균, 2020; 김현아, 2017; 서승희, 2017), 피해자 지원과 구제를 위한 방안 수립(권미경, 2018; 김숙희 외, 2018, 윤덕경 외, 2018)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검찰의 기소 관행에 관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도 열람이 가능한 법원 판결문과 달리, 사건 당사자가 아닌 경우 검찰의 처분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 일부 기인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대검찰청과 업무협력을 체결하고, 2018년 검찰에 접수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사건 피의자 4,948명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 및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것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관행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연구다(윤덕경 외, 2019). 하지만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특정 법률 위반사건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성폭력 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기도 하는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한 검찰의 기소 관행을 파악하기는 어렵다.<sup>4)</sup>

이에 이 글에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고발한 사건의 처리 결과에 관한 자료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로부터 제공받아 검찰의 디지털 성범죄 기소 관행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사

4)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분석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사건을 피해 유형에 따라 분류해보면 촬영 피해가 4,058명(82.0%), 촬영+유포 피해가 464명(9.4%), 유포/재유포 피해가 310명(6.3%)이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피의자를 분류하면 모르는 사람이 3,095명(62.6), 연인이 349명(7.1%), 직장동료가 195명(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분석의 대상이 된 사건의 많은 수가 공공장소 등에서 모르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불법촬영일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윤덕경 외, 2019).

이비성폭력대응센터는 불법촬영물을 유통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를 확대 재생산 하는 플랫폼의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센터로 사건을 상담해온 피해자들의 불법촬영물이 유통된 136개 사이트를 2018년 7월 경찰에 고발하였다. 이에 대한 수사는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공소제기, 법원의 판결로 이어졌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결과 확인을 위해 검찰의 고소·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불기소 결정서, 사법부의 판결문을 확보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간 연구되지 않은 검찰의 공소제기 양상과 기소 관행이라는 문제에 보다 초점을 맞추기 위해, 확보한 자료 가운데에서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중심으로 사건의 종결이 이루어지는 방식, 적용 법조, 기소 여부의 판단 근거, 피의자의 처분 결과 등 검찰의 기소 관행을 분석한다.

다양화되는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포괄하고 이에 대한 범정형을 강화하는 법률의 제·개정만으로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로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범죄 이해, 수사 태도, 기소 관행, 법률조항 적용 방식을 분석해 그 문제점과 한계를 규명하고, 이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에 이 글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 사건의 불/기소 기준, 사이트 운영자, 촬영자, 유포자에 대한 적용 법조 등을 통해 검찰의 기소 관행이 어떠한지, 사건의 공소제기에 어떤 어려움이 존재하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수사 협조 또한 기대할 수 없는 플랫폼을 규제하는 데에 어떤 쟁점들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향후 규제의 실효성을 증대시키는데 필요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디지털 성범죄 산업과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의 특성

닉 스르니첵(Nick Smicek, 2017: 43)은 소비자, 광고업자, 서비스 제공자, 생산자, 공급자 중 두 명 이상을 연결하고, 이들이 상품, 서비스,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기반을 플랫폼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의 채팅 어플리케이션, 트위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 디지털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대여하고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매개하는 웹하드, 해외나 다크웹에 서버를 둔 사이트, 개인 간 파일 공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P2P 프로그램 등은 일종의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이들 플랫폼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불법촬영물의 유통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주요한 공간이자, 불법촬영물의 계속되는 재유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확대재생산 하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김소라, 2018: 2019).

이러한 현실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자료를 통해서도 일부 확인된다. 2018년 4월 30일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문을 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지원, 삭제지원, 수사·법률지원연계, 의료지원 연계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곳에서 지원한 플랫폼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건수는 아래와 같다. 아래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 불법 사이트, P2P 프로그램, 소셜미디어, 불법촬영물 관련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설계된 검색엔진은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대표적인 온라인 공간이다. 이 가운데 불법 사이트는 삭제지원 건수의 3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는데, 대다수 불법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음을 생각할 때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에 있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의 규제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플랫폼별 삭제지원 건수

단위: 건

연도	합계	불법 사이트	P2P	소셜 미디어	웹하드	검색엔진	기타
2018	28,879 (100.0%)	8,239 (28.5%)	2,158 (7.5%)	10,312 (35.7%)	317 (1.1%)	6,705 (23.2%)	1,148 (4.0%)
2019	95,083 (100.0%)	26,170 (27.5%)	29,359 (30.9%)	4,337 (4.6%)	190 (0.2%)	31,369 (33.0%)	3,658 (3.8%)
2020	158,760 (100.0%)	38,332 (24.1%)	5,152 (3.2%)	65,894 (41.5%)	45 (0.03%)	25,383 (16.0%)	23,954 (15.1%)

자료: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1: 40)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는 많은 이들이 쉽게 디지털 성범죄에 접근하고 가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를 지속하고 확대재생산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들은 이용자들이 이미지와 영상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축적한 정보를 통해 새로운 이용자를 끌어들이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와 유료화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이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용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들이 이용자를 모으기 위해 활용하는 주된 수단이 불법촬영물이다. 다양한 콘텐츠를 매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나 소셜미디어와 달리,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는 불법촬영물과 포르노그래피 등 성적 이미지를 자신의 주요한 콘텐츠로 삼아 수익을 창출한다.

이들 사이트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지만, 한국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어로 서비스된다. 소라넷, 'AV스눕', '꿀밤', 'W2V' 등이 대표적 사례로, 이들 사이트에서는 합법적 성인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영화의 성행위 장면을 모은 편



집본, 불법촬영물, 여성 BJ들의 인터넷 방송,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 등 다양한 성적 이미지가 사이트 기준에 따라 분류, 게시, 공유된다. 대체로 불법촬영물을 별도의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이들 사이트가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특정 게시판이나 콘텐츠를 유료화해 여기에 접근할 때마다 가상화폐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매매 업소와 도박사이트 등의 광고 배너를 게시하여 광고료를 받는 것이다. 사이트 운영자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많은 수익을 얻었는데, 2016년 ‘소라넷’을 폐쇄한 경찰은 사이트 운영진이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또한 ‘AV스눴’ 운영자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약 19억 원을, ‘꿀밤’의 운영자는 2016년 한 해 동안 약 15억 원을, ‘W2V’의 운영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4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처럼 이들 사이트는 불법촬영물을 재/유포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를 확대재 생산하는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를 산업화한다(김소라, 2019; 류부곤, 2021).

이들 사이트로 인해 불법촬영물의 완전한 삭제는 어려워지고, 시민단체나 공공기관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은 피해를 구제하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린다. 이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플랫폼에 개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국내외에서 확산되어왔다. 불법촬영물과 아동 성착취물,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 등 다양한 성적 이미지를 공유하며 2019년 방문 횟수만 420억 회에 달하는 캐나다 사이트 ‘폰허브(pornherb)’에 대해 신용카드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마스터카드, 비자가 결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 같은 인식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여성신문』, 2020.12.12).<sup>5)</sup>

5) ‘폰허브(pornherb)’는 한국어로도 서비스되는 사이트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촬영물이 공유되는 등 한국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해온 온라인 플랫폼이기도 하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공론화 이후, 한국에서도 다양해진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의 범정형을 상향하는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촬영과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촬영물의 유포에 방점을 찍었던 이전의 법률과 달리, 촬영 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이미지를 합성·편집·가공하여 이른바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강요한 행위 등 촬영뿐 아니라 구매, 유포, 소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2020년 12월부터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또한 실시되고 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촬영물을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늘리고, 삭제 요청을 받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웹하드와 포털사이트 등 정부의 규제 하에 있는 국내 사업자, 기업 활동을 위해 불법촬영물의 유통 차단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것이 기대되는 국내외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소셜미디어와 달리,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들은 이 같은 법적 조치를 따를 이유가 없다. 이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입법만으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다른 온라인 플랫폼과 달리 경찰과 검찰에 의한 수사와 추적, 사이트 운영자의 검거와 처벌, 사이트의 폐쇄, 범죄수익의 몰수와 같은 형사사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 3. 연구 방법과 연구자료

앞서 언급했듯 이 글에서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불법촬영물이 유통되고 있다며 2018년 7월 경찰에 고발한 136개 사이트의 사건처리 결과, 그 가운데서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중심으로 검찰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 기소 관행을 살펴본다. 2018년 웹하드 카르텔 문제가 공론화되고 그해 8월부터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대에 의해 국내 사업자인 웹하드에 대한 집중 수사와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웹하드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는 일은 줄어들기 시작했다.<sup>6)</sup> 하지만 여전히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들에서는 불법촬영물이 유통되고 있었고, 이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각 사이트에서 채증한 불법촬영물과 함께 센터로 사건을 상담해온 피해자들의 불법촬영물이 유통되고 있는 136개 사이트를 경찰에 고발하였다.

경찰은 136개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전국 경찰서에 배당하였고, 이는 사건을 배당받은 각 경찰서의 수사, 검찰의 불/기소, 기소된 경우 법원의 판결로 이어졌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결과 확인을 위해 경찰의 사건처리결과 통지서, 검찰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와 불기소 결정서, 사법부의 판결문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경찰의 사건처리결과 통지서 25건, 검찰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139건, 불기소 결정서 70건, 법원의 판결문 27건, 그리고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하는 검찰의 항소이유서 1건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서 피해자들의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자원 활동과 활동가 세미나에 참여하였고, 이때 만들어진 관계를 바탕으로

6) 이는 <표 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 건수 중 웹하드에서의 삭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1.1%에서 2019년 0.2%로, 2020년 0.03%로 줄어들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 40).

사이트 고발 당시 센터가 경찰에 제출한 자료와 처분 결과에 관한 자료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로부터 제공받았다.

담당 경찰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경찰의 사건처리결과 통지서 대부분은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만을 담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소요한 시간 및 검찰의 불/기소처분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만 활용하였다. 또한 검찰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는 사건의 기소 여부 및 처분 죄명만을 기재하고 있어 불/기소 여부를 파악하는 데에만 활용하였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이용하여 불기소된 사건의 내용 및 피의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다만 모든 불기소처분 피의자의 불기소 결정서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건의 내용과 불기소의 이유를 확인할 수 없는 피의자가 존재한다. 또한 법원의 판결문이 존재하는 경우, 기소된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이를 활용하였으며, 검찰의 항소이유서 1건 역시 사건의 내용 및 검찰의 기소 관행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였다.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136개 사이트를 경찰에 고발한 결과, 타관 이송 등으로 인한 중복 건수를 제외하고 151개 사건, 172명의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79명이 기소되고 93명이 불기소되었다. 하나의 사건에 운영자와 수익 관리에 관여한 이해관계인 등 여러 명의 피의자가 존재하는 사건이 있어 사건의 건수와 피의자의 숫자가 다르다.

<표 2> 분석 대상 사건의 기소 현황

단위: 명, (%)

기소				불기소								총계
소계	구속	불구속	구약식	소계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각하	
79	15	35	29	93	26	12	0	2	49	1	3	172
(45.9)	(8.7)	(20.3)	(17.0)	(54.1)	(15.1)	(7.0)	(0.0)	(1.2)	(28.5)	(0.6)	(1.7)	(100.0)

기소된 79명 가운데 구속기소된 이는 15명(8.7%), 불구속기소된 이는 35명(20.3%)이었으며, 죄는 인정되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져 정식재판에 부쳐지지 않고 약식 기소된 이가 29명(17.0%)이었다. 한편 불기소된 93명 가운데 죄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용서함으로써 기회를 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는 26명(15.1%),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이는 12명(7.0%), 피의자의 사망 등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이유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이가 2명(1.2%), 피의자를 찾을 수 없어 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최종 결정을 중지하는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이가 49명(28.5%)이었다. 또한 다른 피의자 또는 중요 참고인을 찾을 수 없어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최종 결정을 중지하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은 이가 1명(0.6%),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거나, 공소권 없음 등의 사유로 소추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조사 없이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는 각하 처분을 받은 이가 3명(1.7%)이었다. 사건의 기소율은 45.9%, 불기소율은 54.1%로 기소율보다 불기소율이 높았고, 불기소처분 가운데서도 기소중지와 기소유예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고발로 수사를 받은 172명의 피의자 중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수사된 이는 49명, 불법촬영과 함께 이를 유포한 혐의로 수사된 이는 17명, 불법촬영물의 유포 혐의만으로 수사된 이는 28명, 수익 관리 등 이해관계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된 이는 20명,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확보하지 못해 혐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이는 58명이었다. 다음 장에서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중심으로 피의자 유형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그 기준, 적용 범주, 기소 관행, 공소제기 시 검찰이 부딪히는 어려움과 쟁점 등을 상세히 살펴본다.

## 4.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본 검찰의 기소 관행과 문제점

### 1) 사이트 운영자의 불특정으로 인한 성명불상 기소중지 처분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수사된 49명 중 기소처분을 받은 이는 7명,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는 42명이었다. 기소처분을 받은 7명 중 구속기소된 이는 5명, 불구속기소된 이는 2명이었으며, 불기소처분을 받은 42명 중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이가 4명,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이가 1명, 성명불상 기소중지가 34명, 사이트 폐쇄를 이유로 각하 처분을 받은 이가 3명이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양상과 달리,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기소중지에 집중된 양상을 보인다.<sup>7)</sup>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명 중 4명은 판결문이, 나머지 1명은 피의자를 특정하였으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기소중지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가 존재한다.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이 1명의 피의자는 이후 체포되어 구속기소되었다. 구속기소된 5명은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3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과 불법촬영물을 유통하였으며, 도박사이트 등의 광고 배너를 게재함으로써 수익을 얻었다. 일례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담당한 사건(2018형제11546호)의 피의자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3개의 사이트(‘19페이지’, ‘만수르’, ‘야만닷컴’)를 운영하며 1,460개의 음란물과 40개 상당의 불법촬영물을 게시하고, 배너 광고료로 970만원을 수령해 이 중 925만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이 사건의 피의

7)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사건 피의자 4,948명 중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는 2,561명(51.8%)이었고, 불기소처분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기소유예(47.3%)와 혐의없음(44.3%)이었다(윤경덕 외, 2019: 29-30).

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처벌  
 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를 적용하였다.<sup>8)</sup>  
 나머지 피의자들 역시 ‘베스트 초이스’, ‘오빠넷’, ‘19meng’ 등의 사이트를  
 해외 서버에 개설해 불법촬영물을 게시하고, 배너 광고를 통해 광고료를  
 수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이처럼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하고 피의자를 구속기소한 사건이 존재하  
 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 사건에 대한 검  
 찰처분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해 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최종 결정을 중지  
 하는 기소중지 비율이 높은 양상이다.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수사된 49  
 명 중 약 70%에 이르는 34명에 대해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발견하지 못  
 해 성명불상자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이 이뤄진 모습은 이를 단적으로 보  
 여준다.

검찰에 의해 기소중지 처분된 34명의 피의자 중 18명의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사건처리결과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모두 기소중지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도메인 주  
 소지 및 접속 IP 주소 추적, 호스팅 업체 수사 협조 의뢰, 사이트 개설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 추적 등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  
 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사이트의 운영자를 특정했  
 음에도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기소중지 의견의 이유였다. 검찰  
 은 이 같은 경찰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이트의 운영자를 특정하지

8)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제기했  
 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법원의 약한 처벌은 다른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22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해 ‘소라넷’ 폐쇄 이후 최대의 사이트로 알려졌던 ‘AV  
 스톱’의 운영자는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으며(『동아일보』, 2020.3.27), ‘W2V’의  
 운영자 손정우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세계일보』, 2020.4.20).

못한 16건에 대해 피의자 특정 불가 및 소재 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으며,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했음에도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2건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하고 피의자를 지명수배 하였다. 이는 경찰 수사를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의 운영자가 특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해외 서버 사이트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식은 미국 국토수사안보국(HSI,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에 수사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일례로 대구지방법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한 사건(2018형제43101호)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사이트 서버의 IP 주소를 통해 해당 IP를 할당하고 관리하는 업체가 미국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 국토수사안보국에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국제공조수사 요청을 하였다. 하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다른 방법으로는 피의자를 특정할 방법이 없어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 역시 IP를 관리하는 미국 업체의 수사 협조 없이는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할 다른 방법이 없다며 수사 보완 지시 없이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 국제협약에 기반하지 않은 외국 수사기관에 대한 공조 요청은 강제력을 갖지 않으며, 이에 따라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척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한편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하지 못해 경찰이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 역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사건들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사이트의 접속차단이 이루어져 더는 해당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이 기소중지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VPN(Virtual Private Network) 프로그램을 이용해 접속자의 IP 주소를 변경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을 쉽게 우회할 수 있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한겨레』, 2020.7.21).<sup>9)</sup> 하지만 검찰은 수사 보완 지시 없이 경

9) 국내 사업자의 경우 플랫폼에서 불법 정보가 유통될 때 해당 정보의 삭제와 같



찰의 수사 결과 및 의견을 그대로 인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경찰의 사건 수사과 검찰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2018~2019년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으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시가 가능했음을 생각할 때, 이는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 사건에 대한 검찰의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도메인이나 서버 주소지의 법률에 따르므로 이들로부터 수사 협조를 끌어내기도, 사이트의 운영자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가 피의자 특정 실패로 인한 성명불상 기소중지로 종결된다는 것은 불법촬영물의 재/유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지속하는 플랫폼의 규제에 실패했음을, 사이트 운영자는 수사기관을 피해 계속해서 사이트를 운영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성명불상 기소중지는 사실상 해당 사건을 미결 사건으로 남겨두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의자 특정 불가로 인한 기소중지 처분의 남용을 제어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의 수사 기간을 강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sup>10)</sup> 따라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해외에 서

---

은 행정적인 처분이 활용된다.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의 경우 피해자, 시민단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게시물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불법촬영물, 음란물, 저작권침해 영상 등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정보 대다수가 불법적이며, 성매매업소 및 도박사이트 광고 등을 게시하고 있어 해당 정보의 삭제가 아닌 사이트의 접속차단 조치가 이용된다.

- 10)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와 유사하게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 '밤의 전쟁'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주소를 변경하며 경찰의 수사를 회피해왔다. 경찰은 5년여 간의 추적 끝에 사이트 운영진과 제작자를 검거해 2019년 7월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었다(『미디어오늘』, 2019.9.20). 이처럼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운영자를 특정해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향후 피의자 특정 불가를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일정 기간 이상의 수사를 시행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이트에 대한

버를 두고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국제공조수사를 비롯해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의 운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수사기법을 개발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지속하는 사이트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2) 불/기소 처분 기준의 부재와 적용 범주의 비일관성

사이트 운영자의 불특정으로 인한 성명불상 기소중지 처분이라는 문제와 함께 검찰처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불/기소 처분 기준의 부재와 적용 범주의 비일관성이다. 우선 불법촬영과 유포를 동시에 저지른 행위,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행위에 있어 불/기소 처분 기준의 부재, 특히 기소유예의 남용이 두드러졌다.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 유포를 동시에 저지른 혐의로 수사된 17명 중 10명이 기소처분을, 7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기소처분을 받은 10명 중 불구속기소된 이가 6명, 약식 기소된 이가 4명이었으며, 불기소처분을 받은 7명은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불법촬영과 유포를 동시에 저지른 사건에 있어 불구속 기소, 약식기소, 기소유예라는 3가지 처분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된 28명 가운데 12명이 기소처분을, 16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기소처분을 받은 12명 가운데 1명이 불구속기소되었고, 나머지 11명은 약식 기소되었다. 또한 불기소처분을 받은 16명 중 13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3명이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3명의 피의자가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이유는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불법촬영과 유포를 동시에 저지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불구속기소, 약식기소,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단서를 추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소유예라는 3가지 처분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불/기소 처분 기준이 검찰에 부재한 것은 아닌지를 의심케 한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불법촬영 피해자의 선처 호소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가벼운 행위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 성범죄를 영속시키는 행위로 보고 무겁게 처벌할 것인지 등에 대해 사건을 처분하는 검사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사건에 이르는 경위, 피의자의 범죄 전력과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다른 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의 유포행위 모두가 확인되나 피해자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사건들에서 불구속기소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이, 그리고 ‘avpop’이라는 사이트의 ‘인증/자랑/후기’ 게시판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사건들<sup>11)</sup>에서 약식기소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등 유사한 범죄 행위에 대해 각기 다른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불법촬영을 했거나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피의자의 사정을 폭넓게 참작하여 이들을 기소유예하는 검찰 내의 관행 역시 다양한 처분의 혼재에 영향을 미친 요소이자,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가로막는 기소 관행의 문제점이다.

온라인에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이들에게 기소유예와 같은 낮은 수준의 처벌을 내리거나 처벌하지 않는 사례는 기존 사건들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W2V’를 이용한 혐의로 검거된 337명 가운데 223명이 한국 남성이었는데,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수사하고 이 가운데 217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이들 중 다수를 불기소처분함에 따라 운영자 손정우를 제외하고 42명만이 벌금형을

11)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받은 28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27명이 ‘avpop’이라는 사이트의 ‘인증/자랑/후기’ 게시판(21명), ‘출사제보/토론’ 게시판(2명), ‘은꼴사겔’ 게시판(4명)에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고받았다. 당시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으나, 이용자들이 초범이고 자백, 반성한다는 이유로 법정형에 못 미치는 평균 305만 8000원의 벌금형이 내려진 것이다(『세계일보』, 2020.4.20). 또한 기자 60여 명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취재와 보도를 위해 확보한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이른바 ‘기자 단톡방 사건’에서도 경찰은 12명의 피의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11명에 대해 기소유예 혹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고 1명에 대해서만 약식기소함에 따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바 있다(『미디어오늘』, 2020.3.24).

이 같은 불/기소 처분 기준의 부재와 함께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적용 범조의 비일관성 또한 발견된다.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수사된 49명 중 32명의 피의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되었는데, 이는 불법촬영물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보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를 적용하는 기소 관행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3명의 피의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상 음란물제작·배포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가 함께 적용되었다. 이 외에 사건의 특성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sup>12)</sup>이 사이트에서 발견되는 경우 아청법상 음란물제작·배포죄를 적용하기도 하고, 불법촬영물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재

12)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인해 2020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본 글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조치는 2018~2019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유포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하는 예도 있었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보다 법정형이 높은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향은 현행법의 난점을 보여준다.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불법촬영물의 단순 유포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촬영물의 유포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하면 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촬영물이 상대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촬영물인지 검찰이 입증해야 하므로 해당 법조의 적용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이 담당하던 사건(2018형제11546호)에서 검찰은 3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과 불법촬영물을 게시하고, 배너 광고료로 970만원을 수령한 혐의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광주 2019노54). 이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는데,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이 불법촬영물이라고 주장하는 40여 건의 영상이 모두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합법적인 성인물 가운데 불법촬영물인 것처럼 기획·제작되는 영상물이 존재하며, 검찰이 불법촬영물 40여 건의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피고인 측 주장의 근거였다.

이처럼 사이트에 게시된 촬영물이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된 것을 입증하고 해당 불법촬영물의 피해자를 특정해야 할 책임 때문에, 검찰에서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를 적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한편으로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고발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이트들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

센터가 지원하는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곳이다. 여러 차례의 게시물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의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사이트의 채증 자료와 함께 이들 사이트를 고발했다는 점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이 존재하는 사이트인 것이다. 이렇듯 불법촬영물의 피해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를 적용하는 것은 검찰의 소극적인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성폭력 처벌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법률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 운영자의 기소에 있어 나타나는 적용 법조의 비밀관성은 형사사법기관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 또한 해당 사이트에 불법촬영물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유포한다는 이유로 그 사이트를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이때 검찰이 불법촬영물 입증과 피해자 특정의 부담 때문에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를 적용하게 되면, 피고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사이트에 게시된 이미지와 영상의 음란성에 기대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이트에 게시된 이미지와 영상이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유포된 것일 가능성이 있을 때도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권리의 침해가 아니라 음란성을 기반으로 처벌이 이루어져 디지털 성범죄의 현실과 법률적 대응 간에 틈이 발생하게 되며, 그 처벌 수위마저 높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수많은 불법촬영물의 피해자를 특정하고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불법촬영물과 불법촬영물을 모방한 기획물 등 여성을 대상화하는 여러 이미지가 함께 유통되며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이 지속되게 된다. 따라서 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들이 동의

없이 촬영·유포된 것일 가능성이 크나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을 때, 해당 동영상의 음란성에 기대지 않고 현실과 법률적 대응 간의 간극을 좁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 3) 폭넓은 피의자 사정의 참작과 불기소처분

마지막으로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이트 사건에 대한 검찰처분에 있어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동시에 저질렀거나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피의자, 그리고 사이트의 수익 관리에 개입한 피의자의 사정을 참작해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경향 역시 두드러졌다. 우선 앞서 살펴보았듯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동시에 저지른 사건, 그리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사건에서 불구속 기소, 약식기소, 기소유예라는 처분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특히 불법촬영과 그것의 유포를 동시에 저질러 수사를 받은 16명 중 7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불법촬영물을 유포해 수사를 받은 29명 가운데 13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피의자의 범죄 전력과 반성 여부, 행위의 심각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요소를 광범위하게 참작한 가운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불법촬영과 유포를 동시에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여성의 인적 사항을 가리려는 조치를 했다”거나 “피해자의 얼굴이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촬영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또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피의자가 “초범”이거나,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거나,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다짐”한다는 이유로, 사진의 “전시 횟수, 노출의 정도, 사진의 수 등에 비추어 비교적 사안이 중하지 아니하다”거나 “게시한 사진이 적고 게시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많았다.

이때 검찰은 피의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는데, 이는 검찰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범죄의 처벌과 근절을 향한 의지가 약한 가운데 피의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방패로 삼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야 할 지점이다. 검찰이 피의자의 '반성'과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별다른 근거 없이 신뢰하고, 피의자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피해자 요청의 맥락을 살피지 않고 이를 기소유예 처분의 이유로 기계적으로 활용하면서, 피의자의 정상을 참작하기 위한 요소들이 물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검찰의 약한 처벌 의지는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의 유포라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과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서 일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번 온라인에 게시된 이미지는 완전한 삭제가 쉽지 않으며, 그 게시 기간이 짧다고 해서 피해가 게시 기간에만 그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는다거나 신체 노출이 적고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해서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의 유포 피해를 본 피해자의 고통이 덜어지는 것도 아니다.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을 고려하면 게시된 이미지의 성적 함의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합성과 변형을 통해 얼마든지 성적 이미지로 재가공될 수 있고, 그것이 다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온라인 네트워크와 모바일 환경의 구축으로 시공간을 초월할 가능성이 커지고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진 사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정체성은 분리되기 어려우며, 이때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과 정체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범죄로 인한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인지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불법촬영을 하거나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피의자와 함께 사이트의



수익 관리에 관여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발견된다. 계좌 제공을 통한 자금세탁, 불법 수익의 현금 보관, 광고 게시 등 사이트의 수익 관리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받은 이는 2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2명이 기소처분을, 8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기소처분을 받은 12명 중 7명이 구속기소<sup>13)</sup>, 4명이 불구속기소되었으며, 1명이 약식기소되었다. 또한 불기소처분된 8명 중 7명이 혐의없음 처분을, 1명이 참고인증지 처분을 받았다.

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송금하는 등 자금세탁을 한 혐의, 사이트에 광고 배너의 게시를 요청하거나 이를 중간에서 매개한 혐의, 자금세탁을 위해 계좌를 빌려준 혐의 등으로 수사 받은 8명 중 7명이 해당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이 게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확실하지 않고, 따라서 자신이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의자가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이트의 수익 관리에 개입했을지라도, 그들이 해당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을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소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콘텐츠 유료화를 통한 가상화폐의 획득과 자금세탁, 광고 게재를 통한 수익 등이 사이트 운영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이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가 산업화된다는 점에서 사이트의 수익 관리에 관여한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를 구성하고 재생산하는 중요한 고리로 인지되어야 하며, 향후 검찰은 이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

13) 구속기소된 7명은 모두 한 도박사이트의 개설과 운영에 연루된 이들로, 검사는 이들이 범죄단체활동을 했다고 보고 이들을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따라서 이는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검찰의 처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기 어렵다.

## 5.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방안 탐색

### 1) 사이버범죄방지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의 가입 검토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지속하는 주요 플랫폼 중 하나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이며, 이 같은 사이트의 운영자는 콘텐츠의 유료화 및 각종 불법 정보의 광고 게재를 통해 수익을 얻고 디지털 성범죄를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하지 못해 성명불상자에 대한 기소중지라는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면 수사가 계속되지 못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소재를 발견할 가능성이 작아질 뿐만 아니라, 고발인이 이 같은 검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 또한 가로막히게 된다. 검찰항고와 재정신청 등을 통해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검찰항고가 인용되는 사례가 적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지라도 신청기간과 공소제기결정이 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 존재하여 사건 수사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윤영철·이창수, 2016; 정세중, 2020). 따라서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 이에 기반한 공소제기를 위해 국제공조수사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사기관 관할 바깥에서 증거를 획득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MLA, Mutual Legal Assistance), 외국 수사기관에 대한 공조 요청, 외국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 요청이라는 3가지 방법이 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른 국제형사사법공조는 개별 국가와 체결한 형사사법공조조약에 근거해,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소재 수사, 증거 수집, 증거물 인도, 진술 청취, 압수·수색 등 협조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이다(제 2조). 하지만 협약 체결국의 수사협조가 가능해지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법무부와 외교부를 거쳐

상대 국가로 요청을 제기해야 하므로, 절차가 진행되는데 평균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International Crime Police Organization)를 통해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 교환, 동일 증명 및 전과 조회, 사실 확인 및 조사 등에 있어 외국 수사기관과 상호 협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제 38조). 한국은 현재 경찰청 외 사과에서 경찰, 검찰, 특별사법경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을 취합해 상대 국가에 협력을 요청하는데, 이는 외교부를 거치지 않고 해외의 수사기관에 직접 요청하는 방식으로 국제형사사법공조보다 짧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각국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공조가 늘어나면서 한국 경찰청은 미국 국토수사안보국과 수사 협력을 시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4장 1절에서 다루었던 대구지방검찰청 담당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개별 국가와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국토수사안보국과 같은 해외 기관의 수사 협조를 확신할 수 없고, 공조의 범위도 한정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계정 정보 등 서비스 이용자 정보를 외국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 역시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애플 등과 같은 기업이 아닌 경우 수사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박다운, 2021; 정지혜, 2020).

이러한 한계들 때문에 사이버범죄방지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가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은 2001년 유럽의회 회원국과 비회원국에 의해 채택된 협약으로, 사이버범죄와 관련한 각국의 형사법 구성요건을 통일하고, 사이버범죄 및 전자 형태의 증거물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규정하며, 효율적인 국제형사사법 공조 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구속력을 가진 다자협약으로, 2021년 7월 기준 유럽의회 회원국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비회원국을 포함하여 69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협약을 체결한 국가 간에는 각국이 보유한 정보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지역 수사기관의 협력을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의 운영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도 가능해지게 된다(박다운, 2021; 정태진·이광민, 2019). 따라서 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국내적 조치를 살펴 수사기관 간 국제협력을 도모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간 사이버범죄 수사를 위한 국제공조가 주로 경찰에서 이루어져 왔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부터 경찰이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를 제외한 범죄의 1차 수사 종결을 할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할 때, 국제공조수사 가능성의 확대는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수사가 검찰의 공소제기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을 비롯해 국제공조수사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2) 불/기소 처분 및 적용 법조 의율의 일관성 제고

사이버범죄방지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가입을 통해 국제공조수사의 가능성을 확대할 방안을 찾는 것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에 있어 불/기소 처분 기준의 부재와 적용 법조의 비일관성을 극복하고 기소유예를 위한 사유를 엄격하게 고려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불/기소 처분 및 적용 법조 의율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대검찰청이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대검찰청은 성별에 따른 불법촬영 편파수사를 규탄하며 열린 '해화역 시위'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강화 의지를 밝히며 '불법촬영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발표한다(2018년 10월). 이는 디지털 성범죄를 8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각 범죄유형별로 기본 구형 및 가중 감형 요소 기준을 마련해 검찰이 일관성 있는 공소제기

를 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하지만 이 연구의 분석 자료가 생산된 시점인 2018년 9월에서 2019년 5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자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이러한 ‘불법촬영범죄 사건처리기준’이 지침으로 자리 잡고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온라인에서 유통된 불법촬영물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비롯한 인적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도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약식 기소되는 등 ‘불법촬영범죄 사건처리기준’에서 제시한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불법촬영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언급하며 피의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법원에 호소한 경우가 없지는 않았으나<sup>14)</sup>,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검찰은 피의자를 불기소하였고, 유사한 범죄 행위에 각기 다른 법률조항을 적용하기도 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불거지자 검찰은 2020년 4월 새롭게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발표했다. 이는 조직적인 성착취물의 제작과 성착취물의 영리 목적 유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성착취물 제작자는 죄질에 따라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영리 목적 유포자는 징역 7년 이상, 피해가 광범위할 때는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성착취물 소지자의 경우 초범일 경우에도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벌금 500만 원 이상을 구형하도록 했다(『연합뉴스』, 2020.4.9). 향후 이러한 검

14) 4장 2절에서 다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담당 사건(2018형제11546호)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며 항소이유서에서 ‘불법촬영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언급하고, 국민적 공감대에 맞는 처벌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호소하였다.

찰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간 ‘불법촬영 범죄 사건처리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원인과 사건의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적 쟁점을 파악하고, 불/기소 처분과 법률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높이며, 이를 토대로 기존 기소 관행을 개선하여 처벌의 확실성과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디지털 성범죄의 연속적·산업적 성격의 인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수사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불/기소처분 및 적용 법조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무엇보다 이 문제에 대한 검찰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검찰의 적용 법조가 많은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이며, 운영자, 촬영자, 유포자, 사이트 수익 관리자 등의 상황을 광범위하게 참작한 가운데 기소유예를 비롯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볼 수 있듯, 검찰의 불/기소는 불법촬영물의 유포라는 차원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가 단지 불법촬영물의 게시와 유통만을 매개하고, 이를 통해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촬영물의 제작-유포-공유-변형-소비라는 다양한 행위가 연속되는 가운데 지속되고, 사이트 운영에는 성매매 업소와 도박사이트 등 불법 정보의 광고 게재 및 수익의 운용과 자금세탁이라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추구 행위 역시 연관된다. 따라서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주된 수익 추구 수단으로 삼는 사이트의 특성을 포착하고,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행위를 시야에 넣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4장 3절에서 보듯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의 운영 및 수익 획득에 관여한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를 구성하는 하나의 고리로 잘 포착되지 않는다. 이때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구속기소한 사건과

이들 사건의 적용 법조는 검찰이 디지털 성범죄의 연속적·산업적 측면을 포착해 공소를 제기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수사된 피의자 49명 중 32명의 피의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되었다. 반면 구속기소된 사이트 운영자 5명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뿐만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청법상 음란물제작·배포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방조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죄 등 3~5개의 법률이 적용되었다. 향후 디지털 성범죄,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기소할 때는 이처럼 불법촬영과 불법촬영의 유포, 광고 게시 등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가능하게 만드는 각 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해당 법조를 의율하는 적극성을 발휘하며, 그리하여 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로 여러 혐의를 입증하여 구속기소 하는 수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6. 나가며

이 글에서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관행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지속하는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의 현실을 확인하고자 했다. 2019년 아동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W2V'의 운영자에게 내려진 판결이 알려지고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사법부의 판단들이 재조명되면서, 그간 사법부의 약한 처벌은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의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정형을 강

화하며, 처벌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양형기준을 만드는 것과 같은 정책적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 2019년 1월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에 이어 2020년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국회는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률 개정안들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낮은 수준의 처벌에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입법과 사법의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상황을 개선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검찰의 기소 관행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라는 문제에 접근하고자 했다. 검찰의 공소제기와 구형을 전제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 관행은 디지털 성범죄의 엄중한 처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수사 관행과 검찰의 기소 관행 등에 따라 법률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입법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법을 적용, 집행하는 이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인지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불법촬영물이 유통되고 있다며 2018년 7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고발한 136개 사이트 사건의 처리 결과, 그 가운데에서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중심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검찰의 기소 관행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하지 못해 성명불상 기소중지라는 불기소처분으로 일단락되는 사건이 많고, 불/기소의 기준과 적용 범주가 일관되지 않으며, 불법촬영이나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피의자의 범죄 전력과 반성 여부, 피의자의 상황을 폭넓게 참작해 기소유예를 비롯한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관행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와 함께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하기 힘든 수사상의 어려움 역시 살펴볼 수 있었다. 향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의 성인지적 접근, 디지털 성범죄의 연속적·산업적 성격을 포착한 적극적인 법률 해석 및 일관성 있는 법률조항의 적용뿐만 아니라, 국제공조수사를 확대하기 위한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의 가입 등을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손쉽게 수사를 피하는 사이트의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입증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에 관여해 온 검찰의 기소 관행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에서, 접근이 어려운 검찰처분자료를 활용해 검찰의 기소 관행을 연구한 이 연구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미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고발과 검찰의 불/기소가 이루어진지 한참의 시간이 흘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검찰의 지침과 제·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2021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화하고,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1차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의 역할 분담, 검찰의 기소 관행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문제 역시 가진다. 이후 법원 판결을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의 역동을 분석하고,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규명하며,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의 확실성을 높일 방안을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희영(2020),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복잡성과 정책 과제”, 『이화젠더법학』, 제12권 2호, 45-94쪽.
- 권미경(2018),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이화젠

- 더법학』, 제10권 3호, 39-76쪽.
- 김소라(2018), “디지털 성폭력의 변화 양상과 ‘음란성’(obscenity)을 근거로 한 규제의 한계”, 『아시아여성연구』, 제57권 1호, 163-199쪽.
- \_\_\_\_\_ (2019), “디지털 자본주의와 성폭력 산업”, 『여/성이론』, 제41호, 10-26쪽.
- 김숙희·김영미·김현아 외(2018),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영상물 삭제와 처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제10권 1호, 41-66쪽.
- 김한균(2020), “디지털성범죄 차단과 처단: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의 형사정책”, 『저스티스』, 제178호, 369-392쪽.
- 김현아(2017),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제9권 2호, 1-32쪽.
- 대검찰청(2016),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 \_\_\_\_\_ (2017),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 \_\_\_\_\_ (2018),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 \_\_\_\_\_ (2019),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 \_\_\_\_\_ (2020),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 류부곤(2021), “비닉성(秘匿性)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경찰학연구』, 제21권 1호, 29-59쪽.
- 박다운(2021), “외국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통신 자료 요청 방법과 형사법적 문제”, 『형사정책연구』, 제32권 1호, 167-196쪽.
- 서승희(2017), “사이버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비동의 유포 성적촬영물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제9권 3호, 59-95쪽.
- 윤덕경·김정혜·천재영 외(2018),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_\_\_\_\_ (2019), 『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Ⅱ): 디지털 성폭력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윤영철·이창수(2016),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검찰 기소권의 효과적인 통제방안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7권 3호, 199-242쪽.

- 장다혜·김수아(2018),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 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세종(2020),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한 기소중지의 위헌성과 불복수단에 관한 논의”,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9권 4호, 407-434쪽.
- 정지혜(2020), “사이버범죄 특성에 적합화된 수사 및 처벌을 위한 형사법적 규제방안 연구”, 『입법학연구』, 제17집 2호, 139-164쪽.
- 정태진·이광민(2019),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부다페스트협약 가입과 국제공조 연구”, 『경찰학논총』, 제14권 2호, 65-83쪽.
- 최란(2019), “온/오프를 넘나드는 남성연대와 성폭력”, 『여/성이론』, 제40호, 210-219쪽.
- 한국여성변호사회(2016),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성폭력특례법 개정”,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2016.9.26).
-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1), 「2020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Srnicek, N.(2017), *Platform Capitalism*, Boston: Polity.

#### 〈신문기사〉

- 『경향신문』, 2020.12.26, “‘성범죄 공화국’ 민낯 들춘 2020년, 그럼에도 빛난 ‘우리’”.
- 『동아일보』, 2020.3.27, “n번방 전신 ‘AV스눴’ 회원 122만 명 중 형사처벌은 48명뿐”.
- 『미디어오늘』, 2019.9.20, “성매매 사이트 단속·폐쇄 엄격 대응해야”.
- \_\_\_\_\_, 2020.3.24, “불법촬영물 유포 ‘기자 단톡방’ 기소된 사람은 단 1명”.
- 『세계일보』, 2020.4.20, “죄질 나쁘지만 초범이라... 1심서 실형 전무 ‘부끄러운 한국’”.
- 『시사HN』, 2020.12.9, “사법부의 인식에 균열이 가고 있다”.
- 『여성신문』, 2020.12.12, “비자·마스터카드·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불법촬영물

논란 ‘폰허브’ 결제 중단”.

『연합뉴스』, 2020.4.9, “성착취 영상물 제작에 최대 무기징역 구형…‘관전자’도 처벌”.

『한겨레』, 2020.7.21, “범인 잡혀도…성착취물 피해자는 끝없는 재배포에 운다”.

『헤럴드경제』, 2015.9.16, “‘몰카 범죄’ 기승부리지만 기소율은 하락세…2012년 69%→2015년 32.1%”.

(논문 투고일: 2021.05.15, 심사 확정일: 2021.06.27, 게재 확정일: 2021.06.30)

〈Abstract〉

## Digital Sexual Violence Prosecution Practices and Their Limitations: Focusing on the Cases of Illegally Filmed Distribution Sites with Overseas Servers

Kim, Sora\*

Since the digital sexual violence were publicized in Korea, outdated investigation practices and over-lenient punishments have been considered major obstacles hindering the resolution of the situation. The lenient punishment by the judiciary has been blamed for the prevailing digital sexual violence, along with the scant attention given to these crimes on the part of the prosecution. This article therefore examines the prosecution practices for the digital sexual violence based on the accusation results of 136 websites accused of distributing illegally filmed images by Korea Cyber Sexual Violence Response Center on July 2018, especially focusing on the non-prosecution statement. Accordingly, it was found that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indictment is terminated because the site operator cannot be identified, the standards for prosecution and disposition laws are inconsistent, and there is a practice of not prosecuting the suspects who have filmed and disseminated the materials. This suggests that the investigation should take place in the future, recognizing the reality that illegal filming distribution constitutes part of the industry, enhancing the consistency of disposition, and joining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in order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ve Investigation.

**Key words:** digital sexual violence, overseas server sites, prosecution, prosecution practices, non-prosecution statement

---

\* Lecturer, Department of Sociology, JeJu National University

